



도민이 중심  
신뢰받는 의회

제409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1차 교육위원회)  
2023. 6. 9.(금) 10:00

#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충청북도 학교운영위원회위원장 협의회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교 육 위 원 회  
수 석 전 문 위 원

충청북도 학교운영위원회위원장 협의회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검 토 보 고 서

1. 발의자: 이정범 의원 등 7인

2. 발의일자 및 회부일자

- 발의일자: 2023년 5월 31일
- 회부일자: 2023년 6월 1일

3. 제안 이유

- 학교운영위원회위원장 협의회 위원의 의무 규정에 교육의 정치적, 파당적 중립성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고, 임원의 임기 등 현행 조례에 따른 운영상의 미비점을 보완하여 학교운영위원회위원장 협의회 운영의 내실화를 제고함으로써 궁극적으로는 도내 단위학교의 학교 운영위원회 활성화와 학교자치 발전에 기여하고자 함.

4. 주요내용

- 소속 학교 운영위원장으로서의 임기만료로 지위를 상실한 임원의 경우, (현행) '잔여 임기동안의 자격 상실'에서 → (개정안) '잔여임기를 유지'하도록 변경함(안 제4조)

- 위원의 의무 규정에 「교육기본법」 제6조제1항에 따른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에 관한 사항을 신설함(안 제5조)

## 5. 검토 의견

### 가. 조례 개정 이유

- 본 개정안은 충청북도 학교운영위원회위원장 협의회 위원의 의무 규정에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 보장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고, 소속 학교 운영위원장 지위를 상실한 경우에도 임원의 잔여 임기를 유지하도록 하여 학교운영위원회위원장 협의회가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 공백 없는 운영으로 각급학교의 학교운영위원회 활성화와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음.
- 충청북도 학교운영위원회위원장 협의회는 「초·중등교육법」 제31조 및 「유아교육법」 제19조의 3에 따라 설치된 각급 학교별 학교운영위원회가 지역의 특성과 교육적 요구를 반영한 자율적이고 창의적인 학교운영을 지원하고, 학교운영에 대한 정보교환과 의견제시, 협의와 논의를 통하여 단위학교별 학교운영위원회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2017년 제정된 현행 조례에 근거하여 운영되고 있음.
- 각급 학교의 학교운영위원회는 학교교육과정 운영방법, 교과용 도서 및 교육자료 선정, 정규학습시간 종료 후 또는 방학기간 중 교육·수련활동, 대학입학 전형 중 학교장 추천에 관한 사항, 초빙교사 추천, 공모 교장의 공모 방법·임용·평가, 학교의 예산과 결산 등 학교운영 전반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자문하는 기구로서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이

요구되는 위원회이며, 이러한 각급 학교의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장을 구성원으로 하는 충청북도 학교운영위원회위원장 협의회 역시 같은 맥락에서 구성원의 정치적 중립성은 중요하다 할 것임.

- 교육의 정치적 중립은 「대한민국헌법」 제31조에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한다”고 명시되어 있고, 「교육기본법」 제6조에서도 ‘교육은 교육 본래의 목적에 기하여 운영·실시되어야 하며 어떠한 정치적·파당적 기타 개인적 편견을 전파하기 위한 방편으로 이용되어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국가공무원법」 제65조에도 공무원의 정치운동을 금지하고 있어 우리나라 교육에 있어서 정치적 중립성은 매우 중요한 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음.
  
- 또한 「초·중등교육법」 제32조의2에 명시되어 있는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의 결격사유 규정이 「국가공무원법」의 결격사유를 인용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59조제8항에는 위원이 그 지위를 남용하여 해당 학교와의 거래 등을 통하여 재산상의 권리·이익을 취득하거나 다른 사람을 위하여 그 취득을 알선한 경우에는 위원 자격을 상실할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어,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이 공무원은 아니지만 그에 준하는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이 요구되는 것으로 사료됨.
  
- 따라서, 충청북도 학교운영위원회위원장 협의회 위원들의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 의무와 소속 학교 운영위원장 지위를 상실한 경우에도 임원의 잔여 임기를 유지하도록 하는 사항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본 개정 조례안은 개정 취지와 필요성이 인정됨.

## 나. 주요내용

- 개정안의 주요내용으로 안 제4조에 소속 학교 운영위원장으로서의 임기 만료로 지위를 상실한 임원의 경우, ‘잔여 임기 동안의 자격 상실’하도록 되어 있는 현행 규정을 ‘잔여임기를 유지’하도록 변경한 것은 학생이 졸업한 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의 경우 학생이 졸업한 해의 3월 31일까지 위원 자격을 유지하도록 함으로써, 충청북도학교운영위원회위원장 협의회가 다음연도 임원 구성 시기까지 발생할 수 있는 임원 공백과 그로 인한 협의회가 미개최되는 일 없이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할 것으로 판단되며,
- 안 제5조의 위원 의무규정에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에 관한 사항을 신설한 것은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 확보 중요성에 대한 충청북도 학교운영위원회위원장 협의회 위원들의 인식을 높여 학교운영위원회가 학교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 보장과 학교 운영의 자율성을 증진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사료됨.

## 다. 종합의견

- 본 개정 조례안은 충청북도 학교운영위원회위원장 협의회 위원의 의무 규정에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고, 임원의 임기 등 현행 조례에 따른 운영상의 미비점을 보완하여 충청북도 학교 운영위원회위원장 협의회 운영의 내실화를 제고하고자 하는 것으로 개정 필요성이 인정되며.

- 개정안의 조문 체계와 주요 내용이 법령에 위배되는 사항이 없고, 「법령 입안 및 심사기준」 과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및 집행부 담당 부서와의 협의, 조례안 예고 등의 입법절차를 준수하여 전체적으로 타당한 조례 개정이라 판단됨.